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환자안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세부기준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(안 제11조 및 별표)

법 제19조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미실시,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의 운영현황 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
와 같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1년 간(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2년 간)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
나.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1호	100	200	300
나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보고를 방해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2호	100	200	300
다.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	법 제19조제2항제1호	30	60	100

으로 보고한 경우 라.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19조제2항제2호	30	60	100
---	--------------	----	----	----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9조에 <u>다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4) 202 - 2479